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조 ~ 제4조 (생 략)</p> <p>제5조(수수료)</p> <p>① (생 략)</p> <p>② <u>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u></p> <p>제6조 ~ 제7조 (생 략)</p> <p>제8조(회사의 책임)</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1. ~ 5. (생 략)</p> <p>③ (생 략)</p> <p><신 설></p> <p>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p> <p>제9조 ~ 제15조 (생 략)</p>	<p>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수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u></p> <p>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사의 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u></p> <p>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p> <p>제9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p>	<p>수수료 안내와 변경에 관한 내용 추가</p> <p>전자금융거래법 반영(금감원 요청)</p> <p>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경과이자 규정</p>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6조(약관의 변경 등)</p> <p>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 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u>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u>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② (생 략)</p> <p><신 설></p> <p>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제17조 ~ 제20조 (생 략)</p> <p><신 설></p>	<p>제16조(약관의 변경 등)</p> <p>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 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u>전자우편, SMS 등으로</u>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⑥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제17조 ~ 제20조 (현행과 같음)</p> <p>제21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p>	<p>모바일 통지 방식인 SMS 추가</p> <p>의사표시 의제 통지 관련 내용 보완</p>

현 행	개 정	비 고
<p><신 설></p>	<p><u>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u> <u>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u> <p><u>제22조(거래의 제한)</u></p> <p>①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u> <u>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u> <p>②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u> <u>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u> <p>③ <u>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u></p>	<p>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영</p> <p>거래 제한 사유 기재</p>

현 행	개 정	비 고
<p><u>제21조</u>(준거법 등) ① ~ ② (생략) <u><신설></u></p>	<p><u>알려야 한다.</u> ④ <u>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u> <u>제23조</u>(준거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조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p> <p>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1.~ 16. (생 략)</p> <p>17. <u>간편인증 : 고객이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당사가 발급주체 기관이 되어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설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u></p> <p><u><신 설></u></p> <p>18. 간편인증PIN번호 : 간편인증발등록(발급)시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대신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말합니다.</p> <p>19. 인증비밀번호 : 인증서의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 또는 지문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말합니다.</p> <p>제3조 ~ 제6조 (생 략)</p> <p>제 7조(공동인증서 발급 및 바이오정보/간편인증등록 등)</p> <p>① ~ ⑤ (생 략)</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용어의 정의)</p> <p>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1.~ 16. (현행과 같음)</p> <p>17. <u>간편인증 :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단말기에 6자리 간편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또는 패턴을 입력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본인확인 후 설정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말합니다.</u></p> <p>18. 비대면 실명확인 : <u>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전자적장치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u></p> <p>19. 간편비밀번호 : 간편인증발등록(발급)시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대신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말합니다.</p> <p>20. 인증비밀번호 : 인증서의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 또는 지문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말합니다.</p> <p>제3조 ~ 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 7조(공동인증서 발급 및 바이오정보/간편인증등록 등)</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간편인증에 대한 내용 변경</p> <p>비대면 실명확인 문구 추가</p> <p>문구 변경</p>

<p>⑥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간편인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간편인증PIN번호</u>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3. 고객이 등록한 <u>간편인증PIN번호</u>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된 전자적장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p>⑦ (생 략)</p> <p>제8조 (생 략)</p> <p>제9조(고객확인)</p> <p>① 고객은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입력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입력사항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일치할 경우 계좌명의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9. (생 략) 10.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기기의 <u>간편인증 PIN번호</u> 11. (생 략) <p>② (생 략)</p> <p>제10조 ~ 제15조 (생 략)</p> <p>제 16조(서비스 제공 중지)</p> <p>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전자거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p>	<p>⑥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간편인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간편비밀번호</u>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3. 고객이 등록한 <u>간편비밀번호</u>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된 전자적장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p>⑦ (현행과 같음)</p> <p>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고객확인)</p> <p>① 고객은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입력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입력사항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일치할 경우 계좌명의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9. (현행과 같음) 10.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기기의 <u>간편비밀번호</u> 11.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p> <p>제 16조(서비스 제공 중지)</p> <p>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전자거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p>	<p>문구 변경</p> <p>문구 변경</p> <p>문구 변경</p>
--	---	--

<p>1. ~ 2. (생 략)</p> <p>3.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u>간편인증PIN번호</u> 등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4. ~ 9.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17조 ~ 제25조 (생 략)</p> <p><u><신 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u>간편비밀번호</u> 등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4. ~ 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 ~ 제25조 (현행과 같음)</p> <p><u>부 칙</u></p> <p><u>(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u></p>	<p>문구 변경</p>
---	--	--------------